경상북도 공고 제2020 - 1957호

- 2020년도 하반기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채용 -

법무(변호사) 접수 현황 및 신체검사 등 계획 공고

2020년도 하반기 경상북도 법무(변호사) 소방공무원 채용 원서접수 현황 및 신체검사,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원서접수 현황 : 법무 3명

○ 응시번호 : 0000001, 0000002, 0000003

2 신체검사 계획

○ 검사기간 : 2020. 12. 15.(화) ~ 12. 17.(목) / 3일간

○ 대 상 : 법무분야 응시자 (3명)

○ 장소 및 시간

장 소	주소 및 연락처	검사가능시간	비 고
안동의료원	안동시 태사2길 55 ☎ 054-850-6271	09:00 ~ 17:00 **점심시간(12:30~13:30) 제외**	오전 : 11:30 / 오후 : 16:00 까지 방문.접수해야 당일검사 가능

○ 검사방법 : 기간 내 지정병원에 개인별로 방문하여 검사

○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 사진(3.5㎝ × 4.5㎝) 2매, 필기구, 검사수수료

○ 유의사항

1)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2) 신체검사는 기간 내에 지정병원에서만 받아야 하며, 타 병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검사 비용 등은 **응시자 본인 부담입니다.**

4) 병원 접수처에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임을 반드시 밝히고 접수하여야 합니다.

5) 신체검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붙임1]**에 따라 행하며, 검사항목의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6) 검사당일 **최소 8시간 전부터 금식(음식물 및 약물 금지)을 유지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면접시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신체검사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9)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별표 5]에 의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붙임2]**에 부적합하거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3]에 의한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 **[붙임3]**에 해당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 됩니다.

10)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으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신체검사서 제출 방법

❍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서를 일괄 제출하므로, **응시자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 등

❍ **일　　자 : 2020. 12. 21.(월)**

❍ **방　　법 :**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 시험정보

5 인 · 적성 검사 (온라인)

○ 일　　시 : 2020. 12. 17.(목) 14:00 ~

※ 응시자는 시험당일 13:30분까지 경북소방본부 인사채용팀(610호)으로 입실할 것

※ 응시자는 코로나-19 관련,〔붙임 5〕자가 문진표를 작성하여 검사 당일 제출

○ 장　　소 : 경북소방본부 인사채용팀(610호)

○ 대 상 자 : 법무분야 응시자 (3명)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 모든 응시자는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 자가 문진표(붙임5)를 제출하여야 입실 가능합니다.

- 시험 당일 13:30부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한 후 시험장 입실 가능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의심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의료반 문진 후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시험시간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단, 격리대상자(자가격리자 포함) 등은 사전신고 시 별도 시험장 운영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시험 응시 사전 신고】

- 대상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자(최근 14일 이전 해외입국자 포함) 등
-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자가격리자 등 응시생은 원칙적으로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합니다. 다만,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거쳐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외출 허가 등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확진자는 불가)
- 자가 격리자 등 사전신고

① 사전 신고기간 : 2020. 12. 14.(월) 09:00 ~ 12. 16.(수) 12:00까지

② 접수처 : 경북소방본부 인사채용부서(054 - 880 - 6152, 6155)로 유선 신고

○ 시험응시 불가한 응시생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6 서류제출

○ 일　　시 : 2020. 12. 17.(목) 인·적성 검사 시 제출

○ 장　　소 : 경북소방본부 인사채용팀(610호)

○ 대 상 자 : 법무분야 응시자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법무분야 (변호사)	①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붙임4】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응시자 본인기준 발급(상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포함)** ③ 사법(변호사)시험 합격증 사본 1부 ④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주민등록 초본 1부**(상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포함)** ※ 병적사항 및 과거 주소변동 이력 기재 ※ 산업기능요원은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복무기관" 기재) ⑥ 최종학력증명서 ☞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 유의사항

1) 등록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포기자로 간주되어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본의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 사본 이외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기재사항 등과 상이하거나, 허위증명, 자격 미확인 또는 미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본 시험계획은 코로나-19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 및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http://www.gb119.go.kr) 채용정보에 공고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경상북도 소방행정과 (☎ 054-880-6152, 615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1부.
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코로나-19 자가 문진표 1부.
6.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붙임 1]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4㎝)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 명	생 년 월 일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kg		
				혈 압				
시력	맨눈	좌: 우:	색 신 (색 각)		청력	정상	좌: 우:	
	교정	좌: 우:				교정	좌: 우:	
안 질 환				이비인후질환				
치 아				호흡기질환				
간 질 환				신경질환				
소화기질환				피부질환				
순환기질환				정신질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 사 결 과 합 격 여 부	[ ] 합 격 [ ] 불 합 격 [ ] 판 정 보 류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 ]안에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붙임 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붙임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2020년도 하반기 (법무)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제1호, 제17조제1항 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경상북도에서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table>
<tr><td>수집·이용 목적</td><td>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법령상 의무이행 등</td></tr>
<tr><td>개인정보 처리 근거</td><td>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8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6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 제24조,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td></tr>
<tr><td>수집·이용할 항목</td><td>-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연구논문실적, 특허실적, 병역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등</td></tr>
<tr><td>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td><td>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제공받는기관</th><th>제공근거 및 목적</th><th>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th><th>보유 및 이용기간</th></tr>
<tr><td>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td><td>-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td><td>- 성명, 주민번호</td><td>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td></tr>
<tr><td>국세청</td><td>-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소득, 납세 사실 등 확인</td><td>- 성명, 주민번호</td><td>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td></tr>
<tr><td>경력증명서 발급기관</td><td>-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경력사항 사실 여부 확인</td><td>-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명, 근무부서명,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근무시간</td><td>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td></tr>
<tr><td>대학 등 학위 발급 기관</td><td>-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학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학위 취득 여부 확인</td><td>- 성명, 생년월일, 학위명, 학위번호, 취득일자, 전공명</td><td>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td></tr>
<tr><td>자격증 발급 기관</td><td>- 임용령 제15조,제42조, 시행규칙 제28조
- 자격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자격 취득 여부 확인</td><td>-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td><td>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td></tr>
</table></td></tr>
<tr><td>보유·이용기간</td><td>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채용후보자 등록 및 합격자 명부 관리를 위하여 최종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채용 절차 종료 후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td></tr>
<tr><td>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td><td>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채용시험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채용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td></tr>
<tr><td>수집·이용 동의 여부</td><td>경상북도에서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td></tr>
</table>

2020년 12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5]

코로나19 자가 문진표

본 자가문진표는 (**2020년 하반기 경상북도 법무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응시자 본인 및 다른 응시자 등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문진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협조 및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 주출입구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문1. 최근 14일 동안 방문(여행 포함)한 국가가 있나요? (해당란에 "√" 표시)

[ ] 방문력 있음(국가명:) **[ ] 방문력 없음**

(기간:)

문2. 최근 14일 동안에 아래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해당 없을시 문3으로)

[ ]발열감	[ ]오한	[ ]두통	[ ]인후통	[ ]콧물
[ ]기침	[ ]호흡곤란	[ ]구토	[ ]복통 또는 설사	[ ]그 밖의 증상 ( )

문3. 질병관리본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나요? (해당란에 "√" 표시)

[ ] 예 (격리해제일 :) **[ ]** 아니오

문4. 기타 필기시험 응시 관련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술하여 주십시오

ex) 선별진료소 검사 유무 및 검사 결과, 14일 이내 확진환자 동선 장소 방문 여부, 국내 집단발생 연관 여부 등

위 자가 문진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12월 일

응시번호: **성명:** **(서명)**

[붙임 6]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수험생은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감염관리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외에도 다른 수험생과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은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시험당일 응시자 등록시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 확진환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시험장에서의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자가격리자**(최근 14일 이전 해외입국자 포함) → 별도장소 응시 → 응시자에게 별도 통보